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 등에 따라 2004년부터 중학생 의무 교육 전면시행으로 중학생 장학금의 지원을 삭제하고

○ 대학생(전문대 포함)들에게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 교육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

○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세입·세출외현금 관리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

○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조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「성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내용

○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영세농어민의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)으로 한다.(안 제2조제1항, 제2항, 제3항)

○ 장학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,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.(안 제7조제2항)

○ 기금관리 공무원 (안 제7조의2)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여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여함

5. 참고자료

가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나.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"를 "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"중·고등학교" 를 "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, 단, 방송통신, 학사고시,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)" 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중 "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" 을 "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)" 으로 하고, 동항 제2호중 "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" 을 "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)" 으로 하며, 동항 제3호중 "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" 을 "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)" 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"세입·세출외현금으로" 를 "세입·세출예산외로" 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기금관리 공무원)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담당주사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(이하 "장학금" 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**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, 단, 방송통신, 학사고시,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.)**----------
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(생략) 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2.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3.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	제2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(현행과 같음) 1.---------- ----**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)** 2. ---------- ----**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)** 3. ---------- -----**고등·대학교 학생(전문대 포함)**
제7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 ①(생략) ②장학기금은 **세입·세출외현금으로** 관리하고,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.	제7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**세입·세출예산외로**----- ----------
〈신 설〉	**제7조의2(기금관리 공무원)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** **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사회보장담당주사로 한다.**
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